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95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3
2.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3

I. 개요

1.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95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15.

(3) 회 부 일 : 2025. 9.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경제산업 특구(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별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세제지원은 지역별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격차 해소 및 지역 내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12조의2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이만희 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형동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추경호의원안, 강명구의원안, 서영교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 감면대상: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감면율: 5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 (청년, 서비스업 2,000만원) ○ 사후관리: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세액 납부 -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을 폐업·해산하거나 사업장을 농공단지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납부 ○ 적용기한: ① 농공단지: <u>2025. 12. 31.</u> ②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① 농공단지: <u>2027. 12. 31.</u> (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 (이만희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29. 12. 31.</u> (김형동의원안) <u>2030. 12. 31.</u> (윤준병의원안, 강명구의원안) ②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현 행	개정안
2025. 12. 31.	2027. 12. 31. (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 (이만희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2029. 12. 31. (김형동의의원안) 2030. 12. 31. (강명구의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만희의원안, 김형동의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강명구의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이만희의원안 2025. 3. 13. 발의(의안번호 8883),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김형동의의원안 2025. 7. 3. 발의(의안번호 11236), 윤영석의원안 2025. 7. 24. 발의(의안번호 11697), 추경호의원안 2025. 8. 19. 발의(의안번호 1224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강명구의의원안 2025. 9. 12. 발의(의안번호 12935), 서영교의원안 2025. 9. 15. 발의(의안번호 12954)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농공단지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의미하고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 산업의 낙후·쇠퇴로 인해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판매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를 의미함2).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농공단지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농공단지 수	입주업체 수	가동업체 수	총 고용인원
2017년	468	7,162	6,410	150,042
2018년	472	7,321	6,549	149,128
2019년	472	7,486	6,730	152,612
2020년	472	7,679	6,924	153,253
2021년	476	7,892	7,173	154,450
2022년	476	8,100	7,429	154,125
2023년	481	8,286	7,535	152,012
2024년	484	8,369	7,674	153,396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연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현황]

지정 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기간	비 고	중기부공고
하남일반산단	2023.11.21.~2025.11.20.	신규 지정	제2023-531호
진곡일반산단	2023.11.21.~2025.11.20.	신규 지정	제2023-531호
평동1,2차 일반산단	2023.11.21.~2025.11.20.	신규 지정	제2023-531호

제14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업종, 밀집된 기업의 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생산관리지역
 - 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정 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기간	비 고	중기부공고
평동3차 일반산단	2023.11.21.~2025.11.20.	신규 지정	제2023-531호
주포제2농공단지	2023.12.30.~2025.12.29.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4-6호
동화농공단지	2024.07.22.~2026.07.21.	신규 지정	제2024-419호
삼계농공단지	2024.07.22.~2026.07.21.	신규 지정	제2024-419호
동화전자 종합농공단지	2024.07.22.~2026.07.21.	신규 지정	제2024-419호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2024.07.22.~2026.07.21.	신규 지정	제2024-419호
금사공업지역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포항철강1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포항철강2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포항철강3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포항4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동해북평 국가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동해북평 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나주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나주혁신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장흥바이오 식품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강진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지정 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기간	비 고	중기부공고
세종일반 산업단지(1단계)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주: 음영표시된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세지원 지역(인구 20만 미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현행법 제64조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는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의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를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농어촌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 하에 1986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음.

동 조세특례는 신설 당시에는 적용기한이 없었으나, 1998년 세법개정 시 2000년까지를 적용기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9차례에 걸쳐 적용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 도래 예정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13	11	5	4	2	0.1	0.1
법인세	30	39	49	46	98	96	98
합계	44	50	54	50	100	96	98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기업 입주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농촌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농공단지에는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개발로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198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체 농공단지의 69.7%가 착공 후 20년이 지나 노후되었으며 지원 인프라 부족 등 경쟁력의 지속적인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연도별 농공단지 지정 현황]

(단위: 개, %)

구분	85년 이전	86~90년	91~95년	96~00년	01~05년	0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후	합계
개수	8	209	58	19	43	84	46	7	10	484
비율	1.7	43.2	12.0	3.9	8.9	17.4	9.5	1.4	2.1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의 운영을 통해 2024년 평균 분양률이 전년 대비 1.2%p 상승하고, 입주기업 수도 12.9%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이 50.2%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

(단위: %, 개,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또는 증감률) '23년 대비 '24
분양률	88.5	89.7	1.2
입주기업 수	792	894	12.9
생산액	23,968	35,996	50.2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둘째, 농·어가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소득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고용되는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최근 10년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 수준으로 상

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어가소득 역시 65%~82% 수준에 불과함.

[농·어가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15년	37,215	64.4%	43,895	75.9%	57,800
2016년	37,197	63.5%	47,077	80.3%	58,613
2017년	38,239	63.7%	49,016	81.6%	60,033
2018년	42,066	64.9%	51,836	80.0%	64,821
2019년	41,182	59.3%	48,415	69.7%	69,432
2020년	45,029	62.2%	53,187	73.5%	72,360
2021년	47,759	64.1%	52,392	70.3%	74,505
2022년	46,153	59.1%	52,911	67.7%	78,114
2023년	50,828	60.5%	54,779	65.2%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86,463

주1: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의 총소득을 말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을 말함

주2: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017년부터 4개 분기 산술평균으로 계산한 값을 기재함

자료: 통계청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외에도 각종 혜택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주 검상농공단지, 김제 서흥농공단지, 영천 도남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친환경 인프라를 설치하였고, 군산 서수농공단지, 김제 서흥농공단지, 나주 동수·오량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형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공단지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하였음.

또한, 여러 부처에서 농공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재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2,180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입주기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설자금 대출, 운전자금 대출 등 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둘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재정사업이 진행 중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산업단지에 해당하므로 앞서 나열한 재정사업의 대상에 해당되는바 세제지원 외에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직접 생산 물품의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허용, 긴급경영안정자금·R&D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지원 시 평가가점 부여 등 우대조치가 적용됨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주요 지원현황]

구 분	세부내용
판로지원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자금지원	특별지원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조성 지원 시 우대지원
기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금지원 한도 확대, 분양조건 완화 등 추가지원

자료: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개편 및 활용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2020. 8. 17.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2.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 개요

□ 각 개정안은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역특구 내 창업·투자 촉진 및 지역균형발전, 지역특구 산업의 발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제도는 각 특구의 근거법률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도입 되었으며,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음.

[지역특구 감면제도 개요]

구 분		감면요건	감면내용
위기지역 창업기업(§99의9)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 * 2025년 6월말 기준 해당지역 없음	5년 100% 2년 50%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 구역(낙후지역), 여수해양박람회, 새만금투자진 흥지구, 평화경제특구 (§121의17)	창업 기업	제조업·엔지니어링·전기통신업 등 : 20억원 이상 투자 + 30명 이상 고용 연구개발업 :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물류업 : 10억원 이상 투자 + 15명 이상 고용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제주투자 진흥지구 (§121의9)	입주 기업	총사업비가 2천만달러 이상의 관광업, 5백만달러 이 상의 문화산업·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청소년수련 시설사업·케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교육사업· 의료산업·교육원·연수원·첨단기술활용산업 등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구 분	감면요건	감면내용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12의2)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3년 100% 2년 5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121의8)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121의9)	제조업 : 1천만달러 이상 + 100명 이상 고용 물류업 : 5백만달러 이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121의20)	문화 관련 산업 : 5억원 이상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유원 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 · 청소년수련시설사업 · 교 육원운영사업 : 30억원 이상 * 해당지역 : 광주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121의21)	금융 및 보험업 : 20억원 이상 + 10명 이상 고용 * 해당지역 : 서울, 부산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121의22)	보건의료기술산업(해당지역: 충북 오송, 경북 대구) 식품산업(해당지역: 전북 익산)	

현행 지역특구 등에 대한 조세지출실적은 연구개발특구와 위기지역의 경우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임.

[지역특구 등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구개발특구	33	40	53	31	106	52	116	114	75	157	160
위기지역	-	-	신설	15	100	214	280	411	468	438	45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5	4	0.3	0.7	0.7	1	1	1	0.6	0.9	0.9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23	21	8	5	0.5	1	6	0	0.02	0	0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56	75	65	26	56	8	49	72	36	57	5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	-	-	0.3	1.1	0.1	1	0.7	0.5	0.3	0.3
금융중심지	-	0.01	-	-	-	-	-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0.17	0.15	0.03	1.2	9	11	24	7	5	4	4

주: 2025년 및 2026년은 전망치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및 기획재정부 자료

나. 지역특구별 의의 및 지정현황

□ 법 제12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³⁾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5개 대형 연구개발특구와 14개 거점별 강소특구를 의미함.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한 연구개발특구는 2011년 광주특구·대구특구, 2012년 부산특구, 2015년 전북특구로 확대되었고, 2019년 6월부터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강소특구⁴⁾로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2025년 현재 총 14개에 달함.

2022년말 기준 연구기관 149개, 비연구기관 151개, 기업 10,348개 등 총 10,648개 기관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었는데, 2023년말 기준 연구기관 199개, 비연구기관 202개, 기업 14,594개 등 총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4) 지정현황: 경기(안산), 경남(김해, 진주, 창원), 경북(포항), 충북(청주), 경북(구미),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전북(군산), 충남(천안·아산), 인천, 강원(춘천)

14,995개 기관으로 입주기관 수가 전년대비 약 41% 증가하였음.

[연구개발특구 입주 현황]

(단위: 개)

구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강소특구	합계
연구기관	49	26	18	29	24	53	199
非연구기관	62	40	19	22	21	38	202
기업	2,803	2,641	1,053	3,376	799	3,922	14,594
합계	2,914	2,707	1,090	3,427	844	4,013	14,995

주) 2023년 말 기준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 지정 현황]

2019년 지정							2020년 지정					2022년 지정	
경기	경남	경남	경남	경북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울산	서울	충남	인천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구미	군산	나주	울주	홍릉	천안	강원
												아산	춘천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경우 각종 정부지원 및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현행법상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등록한 첨단기술기업⁵⁾ 및 연구소기업⁶⁾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초 소득 발생연도 개시 기준 3년 동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이후 2년 동안은 50%의 세액을 감면받음.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와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 특구 내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업

6)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하여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 1,500만원)의 합계인데, 청년 상시근로자⁷⁾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당 감면한도 2,000만원이 적용됨.

[연구개발특구 지정혜택 및 제한사항]

구분	주요내용
개발지원	① 실시계획 승인으로 30개 법률상 인허가 일괄 의제 ② 특구개발사업(공영개발)을 통한 토지수용 ③ 특구개발사업 추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국토부 심의 필요)
개발관련 규제완화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및 층수 완화 ② GB해제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임대주택 비율 완화(15% 이내)
부담금 감면	① 개발사업시행자에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등 ②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건축행위 규제	① 특구 토지용도 구역별 지정된 건축물 이외의 건축 제한 ②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심사 (연면적 5천㎡ 또는 16층 이상)
입주계약 (업종제한 등)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및 산업시설구역, 입주 시 계약 필요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부지 양도가격 제한 ③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 제한(특구관리계획 별지4)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지정	① 특구법 제9조 등에 따라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및 설립
각종 지원사업 우대	①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중기부), 신진여성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과기부) 등 ② 각종 특구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사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등
각종 세제 혜택	① (국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② (지방세)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 단, 지방세 혜택은 특구가 소재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7)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임.

□ 위기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의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됨.

고용위기지역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고⁸⁾, 고용재난지역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선포한 지역임.⁹⁾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의미함.¹⁰⁾

2025년 9월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

8)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고용 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9)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1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정된 곳이 없고, 고용재난지역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지정사례가 없음.

참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경우 2025년 5월 1일 전라남도 여수시, 2025년 8월 28일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신규지정되었음¹¹⁾.

[위기지역 등 지정 현황]

구분	위기지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정지역	- * 기존 지정지역(경남 거제)은 '24. 6. 30.로 지정만료	-	- * 기존 지정지역(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은 '23. 5. 28 자로 지정만료	전남 여수 ('25. 5. 1. ~ '27. 4. 30.) 충남 서산 ('25. 8. 28. ~ '27. 8. 27.) 경북 포항 ('25. 8. 28. ~ '27. 8. 27.)
지정기간	2년 * 1년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	-	2년(최대5년) *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년

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제5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위기지역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전라남도 여수시·광주광역시 광산구, 2025. 8. 28. ~ 2026. 2. 27.)'이 포함된다고 해석됨. 다만, 기획재정부는 위기지역에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필요시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이러한 위기지역에 대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각종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경우 중

11) 2025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2년)

견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감소액의 10%와 임금보전액¹²⁾의 15%를 합한 상당액을 세액에서 감면함¹³⁾.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수도권 밖 광역시 내 위기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일반적인 수도권 밖 소재 광역시(7년)에 비해 오랜 기간(10년) 세액감면을 적용하며¹⁴⁾,

12) 임금보전액: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1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

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최초 5년 동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함¹⁵⁾).

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다만,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1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법 제121조의8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의미하며, 현재 2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현황]

구 분	세부내용
1단지	○ 목적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정보통신 및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주지역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 위치/면적 : 제주시 아라동 일원 / 1,098천㎡(약 33만평) ○ 사업기간/사업비: 2005년~2025년 / 9,070억원 ○ 주요 유치업종 : IT·BT 관련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
2단지	○ 목적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1단지) 조성완료에 따라 IT, BT, CT, ET등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주지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위치/면적 : 제주시 월평동 일원 / 848천㎡(약 26만평) ○ 사업기간/사업비 : 2016~2028년(예정) / 3,921억원 ○ 주요 유치 업종 : IT·BT·CT·ET·ST 관련 기업, 연구소 등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현황]

업종	기업수	비율	주요기업
IT	110	58%	카카오(코스피), 이스트소프트(코스닥)
BT	44	23%	덴티움(코스닥), 대봉엘에스(코스닥), 제주개발공사(지방공기업)
ET 등 기타	36	19%	한국에너지종합기술, 제주산학융합원, 제주지역사업진흥원
합계	190	100%	

주: 2024년 12월 기준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 법 제121조의9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7)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2025년 현재 45개 기업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음.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협소한 배후시장, 높은 물류비용, 취약한 산업인프라 등으로 우수기업 유치 및 투자유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형과 단지형으로 나누어져 있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및 대상업종]

구 분	세부내용
개별형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 대상업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마리나업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 (외국)의료기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서비스업 - 첨단산업, 식료품·음료 제조, 화장품제조 등과 이에 관한 연구개발업 ○ 신청기한: 공사 착수일 부터 6개월 이내 ○ 대 상 자: 새로이 투자하는 내·외국인 ○ 투자금액(내·외국인 투자자 동일 적용) - 관광관련 사업 : 미화 2천만불 이상 신설투자 - 그 밖의 사업 : 미화 5백만불 이상 신설투자
단지형 (투자유치 지역)	○ 대상지역: 유원지 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지역 ○ 대상업종: 개별형과 동일 ○ 개발사업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개발센터, 개발센터 출자법인 ○ 총 투자액: 1천억원 이상

자료: 제주도청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8)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현재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공포 후 정부에서는 6개 시범사업을 선정(2005년 7~8월)하였으며, 현재는 4개 지역에서 기업도시 개발 중임.

[기업도시 추진현황]

구분	면적 (만㎡)	사업 기간	총사업비 (억원)	추진현황	기업유치
충주	701	'07-'12	6,352	준공('12), 분양률 100%	23개사 유치
원주	529	'08-'19	10,425	준공('19), 분양률 100%	50개사 유치
태안	1,546	'07-'25	1조 2,982	공정률 61%, 골프장 4개소 운영 중, 콘도 및 화훼보전화센터 등 운영	골프장 4개소, 콘도 등 유치
영암/ 해남	3,379	'06-'30	3조 2,611	3개 지구로 개발 (구성지구 착공 '13.1, 삼호지구 착공 '14.6, 삼포지구 1단계 F1 경기장 사용 등)	골프장 4개소, 등 태양광발전소 등 유치

자료: 기획재정부

[기업도시 입주, 투자, 고용현황]

구 분	입주현황	투자현황	일자리 창출
충주기업도시	23개사 가동	1조 5,687억원	4,214여명 고용
원주기업도시	35개사 가동	9,281억원	4,232여명 고용
태안기업도시	10개사 가동 1개사 공사중	2,534억원	760여명 고용
영암·해남 기업도시	1개사 가동 3개사 공사중	4,473억원	183명 고용

자료: 기획재정부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한편, 법 제121조의17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및 인근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의미하고,

지역활성화지역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지자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2025년 현재 전국 22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고,²⁰⁾ 국토교통부는 2025년 말 새롭게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임.

1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0) 강원(양양군, 태백시), 충북(단양군, 영동군), 충남(청양군, 태안군), 전북(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고흥군, 곡성군, 신안군, 완도군, 함평군), 경북(군위군, 영양군, 의성군, 봉화군, 청송군), 경남(산청군, 의령군, 함천군)

[낙후지역 지정현황]

구 분	지정현황
성장촉진지역	○ 의의: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하여 기반시설 구축 등 국가·지자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25년 기준 70개 시·군 지정 ※ 강원(삼척시, 횡성군 등 8개), 충북(괴산군, 단양군 등 6개), 충남(보령시, 금산군 등 6개), 전북(정읍시, 장수군 등 9개), 전남(강진군, 해남군 등 14개), 경북(문경시, 영덕군 등 15개), 경남(밀양시, 거창군 등 11개), 대구(군위군 1개)
접경지역	○ 의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 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 지정현황: '25년 기준 15개 시·군이 지정 ※ 인천(강화군, 옹진군), 경기(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개발대상섬	○ 의의: 여건이 열악한 도서(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대상 도서를 지정 ○ 지정현황: '25년 현재 전국 371개* 도서가 지정 ※ 인천 32개, 경기 4개, 충남 24개, 전북 23개, 전남 215개, 경북 2개, 경남 63개, 제주 8개
새만금사업지역	○ 의의: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자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한편, 여수해양박람회특구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²¹⁾에 따라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관련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등 사후활용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전시·체험시설 9개를 비롯한 총 33개 기업이 입주해있음.

2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개최 또는 사후활용을 위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며, 박람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박람회특구”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법 제121조의20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2)에 따라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한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를 위해 투자를 유치하고자 지정된 지역으로서 광주광역시에 3개 권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현황]

구 분	문화전당권역	CGI센터권역	라마다충장호텔권역
신청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아킴보주식회사
지정일	2010.12.9. (최초) 2020.4.14. (확대)	2010.12.9. (최초) 2020.4.13. (확대)	2020.8.7.
대상지	동구 문화전당로 38 일원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남구 송암로 61 일원 (CGI센터 주변)	동구 호남동 23-2
면 적	282,433 → 1,947,245㎡	15,536 → 37,100㎡	9,864㎡
주요업종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파생되는 전시 및 공연, 관광숙박업 등	VR, 방송, 영상, VFX 등	관광호텔
입주기업 (387개) (‘24년 기준)	355	31	1
고용현황 (2,368명) (‘24년 기준)	1,864명	439명	65명

자료: 기획재정부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시장과의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법 제121조의21에 따른 금융중심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²³⁾에 따라 지정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의미하며, 현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36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음.

23)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금융중심지(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 기관 현황]

구 분	기 관 명		규 모	비 고
1단계 (29개 3,525명)	이전공공기관 (5개 2,642명)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층(3,40~47)	15.1.15 이전
		한국주택금융공사	8개 층(7,12~13, 23~27)	14.12.17 이전
		주택도시보증공사	8개 층(6,10,11,15~19)	14.12.23 이전
		한국예탁결제원	7개 층(5,36~39, 54, 63)	14.12.5 이전
		한국남부발전	7개 층(4,30~35)	14.10.22 이전
	해양금융 전문기관 (3개 95명)	해양금융종합센터	3개 층(20~22)	14.9 신설
		캠코선박운용(주)	1개 층(53)	15.4.이전
		아시아 태평양 해사 중재센터	1개 층(52)	18.4 이전
	국제기구 (1개 10명)	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훈련기관(FATF TRAIN)	1개 층(53)	16.9 신설 20.4 명칭변경
	D-Space BIFC (3개 5명)	한국씨티은행	1개 층(63)	21.7 입주
		UIB 손해보험	1개 층(63)	23.11 입주
		Linaone	1개 층(63)	23.11 입주
	블록체인 기업 (3개(35개사) 120명)	b-space	2개 층(21~22)	22.3.24. 신설
		기술혁신지원센터	1개 층(8)	22.12.7. 신설
		역외기업 육성센터	1개 층(9)	23.4.입주
	기 타 (6개 70명)	부산국제 금융진흥원	1개 층(52)	20.7 신설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	1개 층(52)	15.9 이전
		국제금융연수원	1개 층(52)	14.9.26 신설
		코스콤부산센터	1개 층(52)	15.10.신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개 층(9)	18.11.30 이전
		KRX·IBK창공	1개 층(55)	19.6 신설
	지역 금융기관 (8개 583명)	한국거래소	10개 층(50~51,55~62)	14.12.23 이전
		신용보증기금(지점)	1개 층(14)	14.12.16 이전
		한국증권금융(지점)	1개 층(9)	14.11.10 이전
		우리은행(지점)	2층	14.10.13 신설
		국민은행(지점)	1층	14.11.28 신설
		NH금융플러스센터(은행·보험·증권)	2층	14.10.13 신설
		부산은행(지점)	9층	14.11.4 신설
		신한은행	52층	14.11.25 신설
개 별 (3개 1,406명)	지역 금융기관 (3개 1,406명)	기술보증기금	지하2, 지상15	11.6 이전
		한국은행부산본부	지하1, 지상4	13.7.22 이전
		부산은행 본점	지하3, 지상23	14.11.4 이전
2단계 (4개, 638명)	이전공공기관 (1개, 169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디지털 스페이스	4개 층(7~10)	19.9 확장
	R&D 센터 (1개 120명)	삼성중공업 R&D 센터	2개 층(16~17)	23.12.11. 개소
	핀테크 기업 (344명)	U-Space BIFC	5개 층(11~15)	19.10.14. 개소
	기타(1개, 5명)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1개 층(11)	15.10.신설/ 20.5 이전

자료: 부산국제금융진흥원

□ 법 제121조의22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²⁴⁾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현재 대구경북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첨단 의료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 제1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추진을 결정하였고, 이후 2008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2009년 8월 대구경북 신서지구(102만㎡)와 충북 오송지구(113만㎡) 등 2곳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되었음.

대구경북은 합성신약, IT기반 첨단의료기기를, 충북 오송은 바이오신약, BT기반 첨단의료기기를 특화분야로 하고 있음.

[첨단의료복합단지 현황]

(단위: 천㎡, %)

지역	총면적	연구시설구역					기타 구역
		계	연구기관 입주구역	핵심인프라 구역	연구지원 시설구역	편의시설 구역	
충북 오송	1,131.1 (100.0)	768.1 (67.9)	520 (46)	116.7 (12.1)	20.1 (2.6)	111.3 (9.8)	363 (32.1)
대구 경북	1,054.0 (100.0)	466.1 (44.2)	316.9 (30.1)	99.1 (9.4)	23.4 (2.2)	26.7 (2.5)	587.9 (55.8)

자료: 보건복지부

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상세현황]

단지	구 분	총 계	토지분양 업체수		연구실분양 업체수		임대 업체수	
			전체	분야별	전체	분야별	전체	분야별
대구 경북 (신서)	소계	93	43	-	31	-	19	-
	기업체	76	31	의약품 8 의료기기 23	31	의약품 4 의료기기 27	14	의약품 6 의료기기 8
	기 타	17	12	-	-	-	5	소속기관 1 공공기관 3 기타 125)
충북 (오송)	소계	132	73	-	-	-	59	-
	기업체	115	56	의약품 29 의료기기 18 화장품 1 의료기술 8	해당 없음		59	의약품 26 의료기기 9 의료기술 24
	기 타	17	17	-	"		-	

자료: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는 다양한 규제 특례²⁶⁾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장비활용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실증평가,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법 제121조의22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²⁷⁾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 발생 이후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

25)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경북대병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전자정 보기사사업단

26) 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 연장(2년 → 5년), 단지내 연구개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등

2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나.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다.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

년간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가 적용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지 내 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관련 기업으로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조세특례의 대상에 해당함.

-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진흥법」²⁸⁾에 따른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산업단지를 의미함.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이용 현황]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합 계	2,321,928.7	100.0
산업시설용지	1,483,324.6	63.9
제 조시설용지	1,366,994.4	58.9
연구시설용지	30,838.1	1.3
물류시설용지	85,492.1	3.7
복합시설용지	69,767.0	3.0
지원시설용지	30,369.5	1.3
상업용지	28,353.7	1.2
주거용지	77,528.3	3.3
기반시설용지	632,585.6	27.3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하고 있고, 2025년 3월말 기준 토지 분양기업 128개사와 식품벤처센터(임대공간) 입주기업 34개사 등 총 162개사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이며 투자유치 성과

28)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및 분양률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성과]

(단위: 개,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투자유치	6	24	50	69	89	96	114	126	125	129	128
고용창출					581	810	1,044	1,416	1,628	자료없음	
분양률	7.2	18.9	27.9	34.5	40.9	49.0	65.2	72.4	73.7	74.5	74.0

주) 2025년 3월말 기준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현행법령²⁹⁾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서 식품산업과 그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예정)기업 162개사 모두 조세특례의 대상에 해당함.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그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다. 지역특구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최수진의원안(2), 이인선의원안, 이춘석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성원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추경호의원안(3),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지역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 특구 내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조문	특구	감면율	
제99조의9	위기지역	5년 100% +2년 50%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	3년 100%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2년 25%)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제121조의20	금융중심지		
제121조의21	첨단의료복합단지		
제121조의22	국가식품클러스터		

현 행	개정안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 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근로자, 서비스업 2,000만원) ○ 적용기한 ① 위기지역: <u>2025. 12. 31.</u> ② 연구개발특구: <u>2025. 12. 31.</u> ③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u>2025. 12. 31.</u> ④ 제주투자진흥지구: <u>2025. 12. 31.</u> ⑤ 제주자유무역지역: 2021. 12. 31. ⑥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구: <u>2025. 12. 31.</u>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u>2025. 12. 31.</u>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① 위기지역: <u>2027. 12. 31.</u>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 (윤준병의원안) ② 연구개발특구: <u>2027. 12. 31.</u>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 (최수진의원안, 황정아의원안) <u>2031. 12. 31.</u> (이인선의원안) ③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u>2027. 12. 31.</u>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 (정부안) ④ 제주투자진흥지구: <u>2027. 12. 31.</u>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 (정부안) ⑤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구: <u>2027. 12. 31.</u>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⑥ 공여구역주변지역: <u>2030. 12. 31.</u> (김성원의원안)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u>2027. 12. 31.</u>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 (정부안) <u>2031. 12. 31.</u> (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⑧ 금융중심지: 2025. 12. 31.	⑧ 금융중심지: 2027. 12. 31.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⑨ 첨단의료복합단지: 2025. 12. 31.	⑩ 첨단의료복합단지: 2027. 12. 31.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2029. 12. 31. (이만희의원안) 2030. 12. 31. (최수진의원안)
⑩ 국가식품클러스터: 2025. 12. 31.	⑪ 국가식품클러스터: 2027. 12. 31.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 (이춘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2029. 12. 31. (이만희의원안) 2030. 12. 31. (한병도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최수진의원안(2), 이인선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추경호의원안(3), 황정아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공포한 날(이춘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최수진의원안 2025. 1. 31. 발의(의안번호 7849), 최수진의원안 2025. 2. 3. 발의(의안번호 7863), 이인선의원안 2025. 2. 11. 발의(의안번호 8061), 이춘석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29), 한병도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45), 이만희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07),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김성원의원안 2025. 4. 10. 발의(의안번호 9694), 추경호의원안 2025. 7. 30. 발의(의안번호 11861), 추경호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10), 추경호의원안 2025. 8. 19. 발의(의안번호 1224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5. 발의(의안번호 12954), 안도걸의원안 2025. 10. 1. 발의(의안번호 13402)

□ 각 지역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연구개발 활성화, 고용안정 및 지역산업의 위기 완화, 낙후지역 지원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등 각 지역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특구의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재 감면한도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특구 입주기업의 고용유인이 증가되어 지역특구 지역의 청년 등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지역특구 지역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청년고용률이 낮은 지역의 지역특구 입주기업의 청년고용이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 1분기 지역별 청년고용률 현황]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48.2	43.8	38.0	46.0	37.2	44.6	41.5	34.6	47.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45.0	47.4	47.2	37.5	40.5	40.0	35.8	40.8	4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고로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2005년 말 기준 23,558명에서 2023년 말 기준 328,630명으로 고용인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라북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역시 매년 고용창출 성과가 증가하고 있음³⁰⁾.

□ 다만, 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각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각 특구의 소관 부처에서 특구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을 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고 특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약 1,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올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힘.

30) 고용창출: ('19) 581명 → ('20) 810명 → ('21) 1,044명 → ('22) 1,416명 → ('23) 1,628명

[2025년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주요 지원사업]

구 분	사업명			형 태	예산 (백만원)	지 원 내 용
광역 특구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간접	5,250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발굴, 등
		기술평가 지원		간접	700	연구소기업 설립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창업 스튜디오		간접	900	연구소기업 설립 및 초기 성장
		연구성과 사업화	일반	직접	7,275	기술사업화
			유니콘	직접	3,750	기술사업화
	특구 혁신성장 스케일업	이노폴리스 캠퍼스		간접	2,400	법률, 재무 등 애로해결 및 투자 연계, 멘토링 등 초기 성장
		실증 스케일업		직접	10,086	지역 내 기술·제품 실증
	글로벌 부스트업	협력거점 기반 PoC		간접	3,000	해외 PoC 및 인증
		글로벌 클러스터 R&BD		직접	2,000	국제 공동 R&BD
소 계					35,361	-
강소 특구	공통수단 지원	기술이전 R&BD		직접	8,750	R&BD(제품화·양산화)
		전략기술 연계 R&BD		직접	3,400	전략기술/딥테크기술 기술사업화
		글로벌 협력 지원		간접	760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특화수단 지원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간접	3,820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발굴
		이노폴리스 캠퍼스		간접	3,865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혁신 네트워크 운영		간접	2,445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역 특성화 육성		간접	6,420	기업 역량강화 및 애로해결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간접	5,100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발굴
		이노테크 기업 육성		간접	10,300	지역주도형 특화분야 기업 스케일업
소 계					44,860	-
합 계					80,221	-

※ 직접: 기업에게 출연금을 지급 사업 수행 지원 / 간접: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목적별 기업 지원

※ 2025년 신규과제에 한함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행정안전부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내한 주한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정비, 도로 개설 등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총 6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
행 중임.

보건복지부는 2024년 약 600억원, 2025년에는 약 470억원의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복합단지 내 융복합 동물실험

험 연구동 등 시설 건립, 노후 연구장비 교체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연구기술지원, 규제지원 등 다양한 재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조세특례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약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 식품기업 및 연구소의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투자설명회 개최, 식품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벤처창업 육성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³¹⁾.

둘째, 일부 특구의 경우 입주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세감면 규모 역시 함께 증가할 우려가 있고,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제도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도입 이후 계속해서 적용기한을 연장해 온 본 조세특례의 정책목표가 일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2023년말 기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은 14,995개로, 2005년말 기준 752개 대비 약 19.9배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약 81조원으로 2005년말 대비 31.7배 증가하였음.

특히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연구소기업의 경우 누적 설립기업 총

31) 최근 5년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음(단위: 백만원).
(’21) 45,320 → (’22) 35,842 → (’23) 37,532 → (’24) 27,430 → (’25) 24,147

2,064개 중 1,339개 기업이 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첨단기술기업은 총 261개 기업이 누적 지정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은 85개임³²⁾.

[연구소기업 등록 현황(누적)]

(단위: 개)

구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강소특구	합계
2023년	484	231	263	237	221	375	1,811
2024년	518	249	286	258	244	485	2,040
증감	+34	+18	+23	+21	+23	+110	+229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첨단기술기업 지정 현황(누적)]

(단위: 개)

구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강소특구	합계
2023년	139	31	20	15	24	18	247
2024년	144	31	20	17	26	23	261
증감	+5	-	-	+2	+2	+5	+14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셋째,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특구도 상당수 있는 바, 이 경우 세액감면이 기업을 특구로 유인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의 경우 조세지원 실적이 미비하거나 전무하여 조세지원이 기업을 특구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2) 연구소기업: 2025년 3월 말 기준, 첨단기술기업: 2024년 12월 말 기준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